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김혜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춘선, 봉양순,
서상열, 신복자, 유정인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)’을 활용하도록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이 개정(시행 2024.7.10.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의뢰 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,
- 품질검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).
- 나.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품질검사의 성적서 및 내용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품질검사를”을 “품질검사 대행을”로, “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”을 “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“정보망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의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험소장은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) ①·② (생략) ③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품질검사 대행을 -----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의뢰-----. ④ 시험소장은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.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7조(품질검사 성과표 서식) 품질검사 성과표의 서식은 시험소장이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. [별지 제1호서식] 품질검사 의뢰서	<u><삭 제></u>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하고(안 제3조 제3항),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품질검사의 성적서 및 내용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하도록(안 제3조제4항)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